

대전고등법원 2022. 11. 2 선고 2022나10949 판결 [부당이득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동인 담당변호사 이지윤

피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대륜 담당변호사 변관훈

변 론 종 결 2022. 9. 21.

판 결 선 고 2022. 11. 2.

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. 1. 14. 선고 2021가합101478 판결

주 문

1.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,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번 내지 6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

대구지방법원 울산등기소 2019. 1. 23. 접수 제7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피고는 원고에게 350,000,000원 및 그 중 10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9. 1. 9.부터, 2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9. 5. 15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230,000,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가. 원고

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20,000,000원 및 그 중 10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9. 1. 9.부터, 나머지 2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9. 5. 15.부터 각 2020. 7. 17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나. 피고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원고와 피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이에 대하여 피고는,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

그것만으로 곧바로 매수인에게 그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(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7다215070 판결)를 들어, 이 사건 제1,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자력이 없어 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피고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여, 매도인으로서 근저당권을 소멸시킨 다음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계약 해제나 이행불능 등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매도인의 근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 곧바로 매수인에게 그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서,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그 판시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선준, 판사 이진영, 판사 이선미

[별지]

부동산목록

1. 경북 울진군 임야 17,130㎡.
17,256분의 4,314 지분.
2. 경북 울진군 임야 126㎡.
17,256분의 4,314 지분.
3. 경북 울진군 답 2㎡.
4. 경북 울진군 답 29㎡.
5. 경북 울진군 전 109㎡.
6. 경북 울진군 전 337㎡. 끝.

